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-112호

「대전광역시교육청 학부모보듬위원회 」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『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』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7년 7월 11일

## 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

# 대전광역시교육청 학부모보듬위원회 조례안 예고

#### 1. 제안 이유

대전광역시교육청 학부모보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으로써 학생의 학교 적응력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.

#### 2. 주요 내용

- 가.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대전광역시교육청 학부모보듬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정함(안 제2조).
- 나. 학부모보듬위원회는 학교부적응 및 위기학생 상담·멘토링 등의 사항을 자문함을 정함(안 제3조).
- 다. 학부모보듬위원회는 7명 이내의 학부모위원과 전문가위원으로 구성하되, 학부모위원은 상담관련 자격증 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고 전문가 위원은 현직 경찰, 사회복지사, 법조인 중에서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위촉 함을 정함(안 제4조).

#### 3. 의견제출

가.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(참조 : 교육수석전문위원실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 나. 의견제출 사항

- 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)
- (2) 의견제출자의 성명・주소・전화번호(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)

(전화 042-270-5243, FAX 042-270-5249, E-mail : 1052jjh@korea.kr)

다. 의견 제출할 곳 : 우35242 /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교육수석전문위원실)

라. 의견제출 방법 : 서면, 전화, FAX, 컴퓨터통신, 직접방문 등

### 4. 개정 조례안 : 붙임

### 대전광역시교육청 학부모보듬위원회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학생의 학교 적응력 제고에 관하여 대전광역시교육 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부모보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설치)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대전광역시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 소속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부모보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- 제3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.
  - 1. 학교부적응 및 위기학생 상담·멘토링
  - 2. 학교부적응 및 위기학생 학습지원·진로코칭
  - 3. 상담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
  - 4. 그 밖에 교육감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
- 제4조(구성 및 임기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학부모위원과 전문가위원으로 구성한다.
  -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학부모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  - ③ 학부모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.
  - 1. 교육학, 상담학 등 관련학과 전공자
  - 2. 청소년지도사, 평생교육사 등 자격 소지자
  - 3. 전문상담교사, 청소년상담사 등 자격 소지자

- 4. 그 밖에 상담관련 전문자격증 소지자
- ④ 전문가위원은 현직 경찰, 사회복지사, 법조인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.
-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제5조(위원장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  -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6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.
  -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이상 소집하고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.
  -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7조(간사)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.
- 제8조(위원의 위촉 해제)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
  - 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  - 2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제9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-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경과조치)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부모보 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로 본다.
  - ② 제4조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## 관계 법 령

## □ 지방자치법

제116조의2(자문기관의 설치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·위원회등의 자문기관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## □ 교육기본법

제13조(보호자) ①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.

# 【대전광역시교육청 학부모보듬위원회 조례안】

# 발 의 의 원 명 단

연 번	발 의 의 원	서 명	비고
1	A Wy	#R	
2	2 20	May	
3	1) 3/1/	Ka	
4	2 34	7h 3 10	
5	97719	197	
6	10-11 300	28114	
7	18 M E		
8	沙村流	(m)	
9	•		•
10			
11			
12			
13			
14			
15			